

의안번호	2203578
의 퇴 인	윤후덕 의원
회 답 일	2024.11.11.
추 계 번호	24E3238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문서관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문학관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는 2025~2029년 5년간 총 0.4억원(연평균 0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2025~202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0.3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0.1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문학관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세	-0.1	-0.1	-0.1	-0.1	-0.1	-0.4	-0.1
- 국세(74.7%)	-0.1	-0.1	-0.1	-0.1	-0.1	-0.3	-0.1
- 지방소비세(25.3%)	-0.02	-0.02	-0.02	-0.02	-0.02	-0.1	-0.0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) 제1항	○ 문학관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	-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) 제1항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세수효과는 ‘면세 대상 문학관 입장료 공급가액 ×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 × 세율 10%’로 추계
 - 최근의 문학관 입장에 대한 매출액을 바탕으로 공급가액을 산출하되, 추계 기간 동안 매출액이 최근 평균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제
 -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의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
 - － 면세제도는 적용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만 면제되고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 부분 면제의 개념이므로,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면세 대상 금액을 추정함
- 개정안의 부칙을 참고하여 세수효과가 2025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공급가액) 개정안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대상인 문학관 입장료 공급가액은 2021~2023년 연평균 1.8억원 수준
 - 문학관 입장료 매출액(부가가치세 포함) 자료를 바탕으로 공급가액(부가가치세 미포함) 금액을 산출함
 - － 전국 문학관(’21년 28개, ’22년 48개, ’23년 54개)을 기준으로 집계한 금액임

[표 2] 문학관 입장료 공급가액 추정

(단위: 억원)				
	2021	2022	2023	연평균
공급가액	1.7	1.9	1.7	1.8

주: 매출액(부가가치세 포함)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(10%)을 제외하여 산출함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부가가치율) 최근 3년 간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 평균은 42.0% 수준
 - 기업경영분석(한국은행)의 “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”의 부가가치율을 활용

[표 3] 문학관 입장료 매출 관련 부가가치율

(단위: %)

	2021	2022	2023	연평균
부가가치율(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)	40.6	34.3	51.1	42.0

자료: 한국은행, “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”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세수효과) 문학관 입장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5년 0.1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0.4억원(연평균 0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5~202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0.3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0.1억원 감소 예상

[표 4] 문학관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시 세수효과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-0.1	-0.1	-0.1	-0.1	-0.1	-0.4	-0.1
- 국세(74.7%)	-0.1	-0.1	-0.1	-0.1	-0.1	-0.3	-0.1
- 지방소비세(25.3%)	-0.02	-0.02	-0.02	-0.02	-0.02	-0.1	-0.02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